

정 관

(제정) 2018.12.19. 제2018-1-1호
(일부개정) 2019.02.22. 제2019-1-1호
(일부개정) 2019.07.12. 제2019-3-3호
(일부개정) 2019.11.12. 제2019-5-1호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이 법인은 “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”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라 하며, 영문으로는 Suwon Convention Center(약자는 SCC)로 표기한다. <개정 2019.11.12.>

제2조(소재지) 재단의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(하동)에 두며,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사무소를 필요한 지역에 둘 수 있다. <개정 2019.02.22.>

제3조(목적) 재단은 「수원시 마이스산업 진흥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원컨벤션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 시설의 운영·관리 및 마이스산업의 육성 등을 통하여 지역산업 발전과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11.12.>

제4조(사업) 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수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고 한다)이 위탁하는 센터 시설의 운영 및 관리
2. 국내·외 전시회, 회의 등 마이스 행사 개발·개최·유치·지원
3. 국내·외 마이스산업 홍보 및 도시마케팅
4. 마이스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
5. 지역특화 마이스산업 발굴 및 육성 사업
6. 마이스 관련 국내·외 기구 가입 및 교류증진 활동

7.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운영

8.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국제기구, 공공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의 수탁사업 수행

9.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업무

<본조개정 2019.11.12.>

제4조의2(수익사업) 재단은 제3조의 설립목적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.

<본조신설 2019.11.12.>

제2장 임 원

제5조(임원) ① 재단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 <개정 2019.11.12.>

1. 이사장 1명

2. 이사 5명 이상 10명 이하

3. 감사 2명

② 제1항제2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.

③ 이사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
제5조의2(임원의 임면 및 임면권자) ① 임원은 공개경쟁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, 다만 정관으로 정한 당연직 임원은 공모 및 추천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.

② 이사장의 임면권자는 시장으로 하며, 그 외 임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.

<본조신설 2019.07.12.>

제5조의3(임원추천위원회 설치) ① 재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며 필요시마다 구성하여 운영한다.

②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다.

<본조신설 2019.07.12.>

제6조(이사장)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, 재단업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19.11.12.>
② 이사장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<개정 2019.07.12.>

제7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 시에는 남은 이사들이 호선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재단사무기구의 업무에 관하여는 재단의 직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9.11.12.>

제8조(이사)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. <개정 2019.11.12.>
② 당연직 이사는 수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재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. <개정 2019.07.12.>
③ 삭제 <2019.07.12.>
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제9조(감사) ① 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한다. <개정 2019.11.12.>
② 당연직 감사는 시 재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 <개정 2019.07.12.>
③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1. 재단 재산상황의 감사
2.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시장에게 보고 <개정 2019.07.12.>
4.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
5.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

제10조(임원의 임기) ①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② 선임직 이사와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1.12.>
③ 당연직 이사와 당연직 감사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④ 선임직 임원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, 후임자의 임기는 선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. <개정 2019.11.12.>
⑤ 임원을 연임시키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, 다만, 비상임 임원을 연임시키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<개정 2019.07.12.>

제11조(임원의 결격사유 등)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(復權)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(禁錮)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5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
제12조(임원의 해임)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

1.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
2. 임원간의 분쟁·회계부정 기타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때
3.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
4.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

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.

제3장 이 사 회

제13조(구성) ① 재단의 최고 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회는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③ 이사회는 이사장, 이사로 구성하며,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.

제14조(회의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이사회는 연1회,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.

1.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
3. 제9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
③ 이사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, 장소, 안건 등을 명시하여 적어도 회의 5일 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15조(의결 정족수 등)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이사장도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16조(기능)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재단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,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2. 재단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3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4.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
5.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<개정 2019.07.12.>
6. 각종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7. 각종 대행사업의 위·수탁에 관한 사항
8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9.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10.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17조(의결제척사유) 이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항

제18조(서면의결)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서면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9조(회의록) 재단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, 출석한 2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9.11.12.>

제4장 재산 및 회계

제20조(재산)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기본재산은 재단의 설립 및 자본의 증식을 위해 시 및 그 외의 출연으로 조성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.

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
④ 재단의 기본재산은 “별표1”과 같다.

⑤ 재산은 그 목록을 작성하여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, 예금의 경우에는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제26조에 의한 결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07.12.>

제21조(운영재원) ① 재단의 사업, 시설의 운영과 관리 및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, 외부기부금, 운영·위탁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.

② 제1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22조(회계연도)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연도로 한다

<개정 2019.07.12.>

제23조(재산의 관리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·증여·임대·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9.07.12.> <개정 2019.11.12.>

② 재단이 매수, 기부채납,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
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·보존 및 기타 관리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4조(재산의 평가) 재단의 모든 재산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의한다.

제25조(사업계획 등의 작성)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·세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07.12.> <개정 2019.11.12.>

② 각 분야 사업비의 경우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단위사업별로 사전 검토 후 예산에 반영한다.

③ 제1항의 제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26조(결산서 등의 제출)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세입·세출결산서를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결을 거쳐 공인회계사의 감사 보고서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07.12.>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27조(잉여금의 처리)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.

제28조(계속비) 재단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
제29조(임원의 보수) 상임이사를 제외한 재단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

아니한다. 다만, 별도 규정에 의한 회의출석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. <개정 2019.07.12.>

제30조(감사의 실시) 감사는 회계 등 재단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31조(보고·검사·감사) 재단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시장이 보고·검사·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9.07.12.>

제5장 조직 및 직원

제32조(사무기구의 설치)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사무기구를 둔다.

<개정 2019.11.12.>

제33조(사무기구의 조직) 사무기구의 조직은 별도의 직제 및 정원규정에 의한다.

<개정 2019.11.12.>

제34조(직원의 임면) ①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.

②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35조(공무원 파견요청 등) 재단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단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<개정 2019.07.12.>

제6장 보 칙

제36조(정관의 변경)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

야 하며,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9.07.12.> <개정 2019.11.12.>

제37조(해산)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후 해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07.12.>

제38조(잔여재산의 귀속 등)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된다.

제39조(운영규정)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시행한다.

② 다만,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·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. <개정 2019.07.12.> <개정 2019.11.12.>

1. 직제, 인사, 보수, 기금, 재산관리, 회계 등에 관한 사항
2.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 <개정 2019.07.12.>

제40조(공고 및 그 방법) 법령에 따른 사항과 법인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대하여는 재단의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에 게재한다.

<본조신설 2019.11.12.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재단의 법인설립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회계연도)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전이라도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4조(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)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“별표 2”와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

부 칙 < 2019.02.22. 제2019-1-1호 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 2019.07.12. 제2019-3-3호 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단, 제5조의 2(임원의 임면 및 임면권자)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제6조(이사장)은 상임이사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부 칙 < 2019.11.12. 제2019-5-1호 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기본재산 목록

구 분	수 량	평가액(천원)	비 고
출연금 (현금)	예금통장	500,000	중소기업은행 수원시청출장소

[별표 2]

재단법인 수원컨벤션뷰로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.

2018년 12월 19일

재단법인 수원컨벤션뷰로 발기인

소 속	직 위	성 명	날 인
수원시	제1부시장	이한규	
수원시	도시개발국장	임인수	
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컨벤션경영학과	교수	김철원	
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컨벤션이벤트경영학과	교수	윤은주	
코트파	대표이사	박강섭	
수원시	도시개발과장	이장환	
가현세무법인	세무사	윤용석	